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원의 대상 등) ①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
2. 석탄가공업자
3. 석탄가공제품운송업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지원취소의 범위,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간,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지원의 제한 등) ①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업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아니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행 중인 석탄광산 이외의 석탄광산에서 생산된 석탄을 거래한 경우
3. 그 밖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2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취소·환수·제외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

5.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보고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4제2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석탄가공업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u>별표와</u> 같다. ② (생략) <u><신설></u>	제14조(석탄가공업의 등록) ① ----- ----- <u>별표1과</u>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 2. 석탄가공업자 3. 석탄가공제품운송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신설></u>
	제19조의3(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신 설>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지원취소의 범위,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간,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지원의 제한 등) ①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업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아니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행 중인 석탄

제45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2. 삭 제
3. (생 략)
4. · 5. 삭 제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보고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

7. ~ 10. (생 략)

<신 설>

광산 이외의 석탄광산에서 생산된 석탄을 거래한 경우

3. 그 밖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5조(권한의 위임) ① -----

-----.

3. (현행과 같음)

<삭 제>

7. ~ 10. (현행과 같음)

②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석

	<u>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u> <u>2.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u> <u>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u> <u>3. 법 제24조의2제5항 및 제6항</u> <u>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취소</u> <u>· 환수·제외에 관한 업무</u> <u>4.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u> <u>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u> <u>품질검사에 관한 업무</u> <u>5.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u> <u>류 등의 제출·보고 및 조사</u> <u>에 관한 업무</u>
--	--

■ 석탄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지원대상 제외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그 처분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1호	1년6개월	3년	5년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2호	6개월	1년	1년6개월
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석탄가공제품운송업자가 소비자에게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24조의2 제5항제3호	1년	2년	3년
4. 「광업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아니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4호 및 영 제19조의4 제1항제1호	1년	2년	3년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행 중인 석탄광산 이외의 석탄광산에서 생산된 석탄을 거래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4호 및 영 제19조의4 제1항제2호	1년	2년	3년
6. 그 밖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4호 및 영 제19조의4 제1항제3호	1년	2년	3년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61